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7. 14.

제 안 자 : 김정복 의원외

1. 수정이유

도유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와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4조에 제3호를 신설함.
“3. 제2조 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”
- 안 제15조 본문에 단서를 추가함.
“무권리자와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”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조 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

안 제15조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.

“다만,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조 내지 제4조 (생략)	제1조 내지 제4조 (생략)
제4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~2 (생략) <u>3. (신설)</u>	제4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~2 (개정안과 같음) <u>3. 제2조 제6호 가목에 관한 사항</u>
제5조 ~ 제14조 (생략)	제5조 ~ 제14조 (개정안과 같음)
제15조(보상금의 반환)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<u>(단서 신설)</u>	제15조(보상금의 반환)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가지지 않은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6조 ~ (생략)	제16조 ~ (생략)